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부과 기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행정정보의 공개(45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의 산정방법 등

-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
 - 공개여부 결정통지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함
 - 서울시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 자치구 : 개별 조례로 정함(각 기관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그 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수의 내용을 청구한 경우 개별 건별로 수수료를 합산하는 대신 공개 결정된 전체 정보를 대상으로 수수료 산정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가능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 감면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감면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확인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출

○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 서울시 감면비율 : 50%(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 제외)

-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수료 납부일을 정함(시행령 제12조제2항)

* 수수료 과다 발생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 통지전 청구인에게 사전 안내